

공무원

총리지시 제111호

1970. 9. 11.

수신 수신처참조

제목 외국 정부로부터의 영예를 받을 때의 허가 및 외국훈장의
파용 허가.

1. 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를 받을 경우에는 공무원법
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

국력의 신장에 따라서 공무원의 국제적 진출이 많아지고 외국정부로
부터 영예를 받는 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이에 따른
허가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무총리
와 총무처장관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내부 의임 되었으니
다음 오령에 의거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
1 등급훈장 국무총리

2 등급이하의 훈장 총무처장관

2. 영예를 받을 때에는 다음의 기재사항을 명기하여 총무처장
관에게 제출한다.

(가) 본적 (나) 주소 (다) 소속기관 (라) 직급 및 성명
(나) 생년월일 (라) 수여국명 (사) 수여훈장 및 훈격 (마) 수여예정일
(라) 주요공적 내용.

3. 외국훈장의 파용 허가.

외국훈장의 파용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소정서식에 외국훈
장 수령 허가 번호를 명기하여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끝.

국 무 총 []
[]

수신처: 1. 중앙선거관리위원회, 국회사무처, 법원행정처, 서울특별시